

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

2023. 04. 03. 제정

2023. 09. 21.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사회과학대학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- ① 본 세칙은 사회과학대학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학과(부) 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학과(부)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이 없을 시 본 세칙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사회과학대학 및 소속 학과(부) 학생총회의 진행 시 본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.
- ④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과 학생대표자회의의 논의 및 의결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사회과학대학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용되는 회의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
1. 회기: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시간을 칭한다.
2. 개회: 회의의 처음 시작을 칭한다.
3. 개의: 회기 중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칭한다.
4. 폐회: 회의의 종료를 칭한다.
5. 휴회: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칭한다.
6. 휴개: 하루 중 잠시 쉬는 것을 칭한다.

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

제4조(공개 원칙)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정족수의 원칙)

- ① 재적 인원의 과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.
- ② 선거 미실시로 인한 대표자 부재 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.
- ③ 사회과학대학 내 학과(부) 학생회칙에 의거 비상대책위원장,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원은 본 회의에서 소속 학과(부) 비상대책위원장, 비상대책부위원장의 권한을 가진다. 단, 본래 직책이 학년 대표일 경우 학년 대표직에는 대리인을 선임한다.

제6조(발언 자유의 원칙)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저지당하지 아니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.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장의 결정에 공동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(과반의 찬성)할 수 있다.

제7조(다수결의 원칙)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. 단, 정·부학생회장의 탄핵안 상정 및 회칙 개정 의결 시 학생회칙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8조(소수의견 존중의 원칙)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하되,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.

제9조(일사부재의 원칙)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. 단, 필요한 경우 번안(표결 심의의 동의)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. 표결 재심의 성립요건은 재적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한다.

제3장 안건의 채택과 통과

제10조(원안의 삭제) 안건 원안에 대한 삭제는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11조(안건의 추가 상정과 채택) 안건 채택 순서가 지난 후의 안건의 추가 상정과 채택은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12조(회순 변경)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순서가 지난 후의 회순 변경은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 없이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4장 의사 진행

제13조(발언의 종류) 사회과학대학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해지는 발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질문 발언: 회의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
2. 의사진행 발언: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성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
3. 규칙 발언: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 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
4. 찬반 발언: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발언
5. 신상 발언: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내용을 발언

제14조(발언권 획득)

- ① 발언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 의사를 표하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한다.
- ② 발언 시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, 발언의 요지를 밝힌 뒤에 부연 설명을 한다.

제15조(찬반토론)

- ①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성과 반대 각 1인을 의장이 지명한다.
- ② 발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
 - 1.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: 5분 이내
 - 2. 질의답변 및 보충토론: 4분 이내
 - 3.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: 4분 이내
 - 4. 단, 특별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자 토론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할 수 있다.
- ③ 발언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
 - 1. 질의 답변: 3인 이내
 - 2. 찬반 토론: 5인 이내
 - 3. 단, 발언자 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할 수 있다.
-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.

제16조(토의 순서)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- 1. 안건 상정
- 2.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
- 3. 질의 및 답변
- 4.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
- 5. 토론 종결
- 6.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 및 제안 설명(수정안 미제출 시 원안에 대한 표결 진행)
- 7.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
- 8.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
- 9. 토론 종결
- 10. 수정안 채택 여부에 대한 표결 진행
- 11. 수정안에 대한 표결 진행(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한 표결 진행)

제17조(수정안)

- ①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, 제청이 있으면 표결로 해당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.
- ② 수정안 상정 이후의 토의 순서는 질의 및 답변,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, 토론 종결, 수정안 표결순으로 진행한다.
- ③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, 원안은 별도 의결 없이 파기한다.
- ④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,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.

제18조(기타)

- ① 한 안건의 의결이 시작된 시점부터 의결이 종료된 시점까지 자리 이동을 제한한다.

②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.